

202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안내

1. 대 상: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
 2024학년도 1학기에 7학기 이상 재학 예정자
 ※ 2024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(2023학년도 2학기 휴학생 및 교환학생)도 신청해야 함.
2. 기 간: [2023. 9. 6\(수\) 10:00 ~ 9.15\(금\) 17:00](#)
 ※ 기간 엄수 (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)
3. 방 법: 「마이유레카 → 교직 → 교육실습대상자확인」
4. 절 차

1 교육실습 대상자 확인

마이유레카

학사

교육실습대상자확인 1

3 신청

소속분류 20.학부 > 년도 > 학기 > 학번

성명 > 학생상태 재학

소속대학 사범대학 > 학부/학과 > 전공

학년 > 이수학기 > 입학구분 > 입학일자

전화번호 > 핸드폰 > 부복수전공

확인여부 > 신청일자 > 실습과목

신청여부 선택 2 *미실습 및 교직포기를 선택한 경우 사유를 꼭 적으세요.

사유

2 신청여부: 『실습』, 『미실습』, 『교직 포기』 중 하나 선택

(미실습 및 교직 포기 선택한 경우: 반드시 사유 기재)

(교직 포기: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에 한함)

3 신청

4 교육실습 신청 결과 최종 확인: 「마이유레카 → 교직 → 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」

* 신청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5. 교육실습 기간

[4월] 2024. 4. 1(월) ~ 4. 26(금)

[5월] 2024. 4. 29(월) ~ 5. 24(금)

▶ 실습 기간 관련 본교 규정

실습 기간 중 지각, 조퇴, 결과의 합이 3회인 경우는 1회의 결근으로 간주하고, 결근이 3일 이상인 자는 실격으로 한다.

▶ 실습 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(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)

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(개교기념일 포함) 등이 포함될 수 있다. 이 경우 공휴일·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(초과 시,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) 다만,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(고시 제6조 4항)

※ 규정에 따른 실습 기준 충족 여부 예시

- 1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없고, 실습생의 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
본교 규정에 따라 실격
- 2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1회 포함되고,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1일, 실습생 결근이 2일인 경우
전체 실습일수(4주)의 20%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.
- 3) 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3회 포함되고, 실습교의 재량휴업일이 2일인 경우
전체 실습일수(4주)의 20% 기준을 초과하므로 교육부 규정에 따라 실격